

위원회 직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120
정무직 계	5
위원장	1
부위원장	1
상임위원	3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계	115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8
행정사무관 · 부감사관 · 검찰사무관 · 수사사무관 · 전산사무관 · 사회	
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경정 또는 5급 상당 별정	
직	23
행정주사 · 감사주사 · 검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기록연구	
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해양수산주사 · 경감 또는 6급 상당 별	
정직	38
행정주사보 · 감사주사보 · 검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경위	
또는 7급 상당 별정직	39
8급 상당 별정직	4

비고

- 이 표에 따른 직원의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재정부, 4명(부감사관 1명, 감사주사 2명, 감사주사보 1명)은 감사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인사혁신처,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기획재정부, 4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교육부, 5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명, 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 5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명)은 보건복지부, 4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 후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업무량 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거쳐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으로 정하여야 한다.